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2. . (제 회)	

주 차 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2.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강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관리하는 근거를 신설,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 법률 제19983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 법률 제00000호, 2024. 0. 0., 일부개정, 2024. 0. 00. 시행)됨에 따라, 안전도인증 업무 담당기관을 지정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법률에서 위임한 장기 방치 차량 강제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에 따른 안전도인증 신청업무 처리기관 변경, 안전도인증 업무 대행기관 지정요건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4제1항 내지 제4항, 별표2)

안전도인증 신청서 접수기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지정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요건 등을 규정

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보험 보상한도 기준, 보험가입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의7제1항
·제4항·제5항·제6항 신설, 같은 조제2항 내지 제3항)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가입 대상 기계식주차
장치의 규모, 보험 보상한도 기준, 보험가입시기, 보험계약 체결 거부
예외 사유 등을 규정

다.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신설에 따른 인근 주차장 확보 통지
방법, 주차장 확보비용 납부 통지 방법 등 규정(안 제12조의17)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에 따른 인근
주차장 확보 통지 방법 및 주차장 확보비용 납부 통지 방법 등을 규정

라.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관리 근거 신설에 따른 차량 방치기간 규정
(안 제3조 신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동명령, 직접 이동이
가능한 기준일이 되는 차량 방치기간을 1개월로 규정

마. 수시검사 신청기한 규정(안 제12조의3제7항)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제도 신설에 따라 수시검사 신청기한을 30일로
규정

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안전관리 관련 의무 신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금지 규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6) 보험가입, 안전·보수교육 이수 및 자체점검 실시 등의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의 의무 신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에 따른 이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사.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인용규정 정비(안 제12조의12제1항·제3항·제7항 개정, 제12조의14제3호·제12조의18제1항·제12조의19·제12조의20제1항)

법령 개정에 따라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사고조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부품변경 또는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30일까지

2.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부터 30일까지

제12조의4의 제목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9조의12”를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19조의1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검사기관”을 각각 “지정인증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업무”를 “안전도인증업무 또는 검사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검사기관”을 “지정인증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2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9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며,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사망의 경우에는 배상한도액이 1인당 1.5억원 이상일 것
3. 부상의 경우에는 배상한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상일 것
4.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배상한도액이 1인당 1.5억원 이상일 것

④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2.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배상보험의 만료일 이내

⑤ 배상보험에 가입한 보수업자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배상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배상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9조의1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계식주차장 또는 보수업에 대한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가 취소 또는 변경되어 배상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영업정지, 휴업·폐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더 이상 보수업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수업자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다른 배상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배상보험의 가입의무자가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4. 보험사업자가 해당 배상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5. 「상법」 제650조제1항 또는 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의12의 제목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9조의22제5항”을 “법 제19조의22제6항”으로,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사고조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라목 중 “법 제19조의12”를 “법 제19조의1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의14제3호 중 “법 제19조의22제5항”을 “법 제19조의22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의17부터 제12조의19까지를 각각 제12조의18부터 제12조의20까지로 하고, 제12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 후단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주차장 확보기한을 정하여 인근(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인근 주차장 확보기한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차장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인근 주차장 확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장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주차장 확보비용과 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19조의24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주차장 확보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차장 확보비용 납부 통보를 받은 자가 확보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주차장 확보비용을 부과·징수 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⑦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의18(중전의 제12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 4제1항”을 “법 제19조의25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0(중전의 제1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 4제1항”을 “법 제19조의25제1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제12조의4제2항 관련)”을 “지정인증기관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으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

구 분	지 정 요 건
법인형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일 것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을 상시 보유 할 것 가. 기계 또는 전기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기계 또는 전기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와 관련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2.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

구 분	지 정 요 건
-----	---------

법인형태 및 사무소	○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말한다. 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하나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넷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15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설비기준	가. 전류계 5대 이상 나.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5대 이상 다.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5대 이상 라. 접지저항계 5대 이상 마. 절연저항계 5대 이상 바. 초시계 5대 이상 사.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200mm) 5대 이상 아. 아들자 캘리퍼스(300mm) 5대 이상 자. 경도측정기 5대 이상 차.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 1대 이상 카. 줄자 5대 이상

별표 6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6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제1호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 일 이하인 경우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 일 이하인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 는 경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나.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제2호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인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다)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다.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 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라.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제1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마.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 제2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바. 법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제2호의2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사.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제3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아.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제4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자. 법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제4호의2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차. 법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는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법 제30조제2항 제4호의3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카.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제4호의4 법 제30조제2항 제4호의5			
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가)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나)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타. 법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운영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제4호의6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파.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 제5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하. 법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	법 제30조제2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제5호의2			
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제6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너. 법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 제1호	30만원	40만원	50만원
더.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 제2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러.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 제3호			
1)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2)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3)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50만원		
머. 법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 제4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00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 영에 의하여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	제3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① ----- ----- ----- ----- ----- ----- ----- ----- ----- -----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이하 “지정

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
검사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제12조의4(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19조의12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
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
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
검사 등) ① ~ ⑥ (현행과 같
음)

⑦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
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가목
에 따라 부품변경 또는 운반
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에
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을 사용
하려는 날로부터 30일까지

2.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다목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 수시검사를 요청한 경우
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
로부터 30일까지

제12조의4(안전도인증 또는 검사
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안전
도인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
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
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3. 검사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
는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7(보험) <신설>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는 자 또는 법 제19조의12제2항

---.

② ----- 지정인증기관
및 전문검사기관-----

--.

③ ----- 지정인증기
관 및 전문검사기관-----

-----.

1. 2. (현행과 같음)

3. 안전도인증업무 또는 검사업
무-----

④ -----
----- 지정인증기관
및 전문검사기관-----

---.

제12조의7(보험) ① 법 제19조의1
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
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치를 말한다.

② -----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의16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신 설>

<신 설>

② 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한다)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
보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며,
-----.

1.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
2. 사망의 경우에는 배상한도액이 1인당 1.5억원 이상일 것
3. 부상의 경우에는 배상한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상일 것
4.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배상한도액이 1인당 1.5억원 이상일 것

③ -----

----- 제2항-----
-----.

<신 설>

<신 설>

③ 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④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2.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배상보험의 만료일 이내

⑤ 배상보험에 가입한 보수업자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배상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배상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⑥ 법 제19조의1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

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계식주차장 또는 보수업에 대한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가 취소 또는 변경되어 배상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영업정지, 휴업·폐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더 이상 보수업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수업자 또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이 다른 배상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배상보험의 가입의무자가 하나의 가입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4. 보험사업자가 해당 배상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5. 「상법」 제650조제1항 또는 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의12(사고조사판정위원회

제12조의12(사고조사위원회의 구

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

1. (생략)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다. (생략)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생략)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

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2제6항----- 사고조사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법 제19조의12제2항-----

마. (현행과 같음)

<삭제>

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신 설>

④ ~ ⑥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⑦ ----- 제6항-----

-----.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9조의22제6항-----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운행 중지명령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 후단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주차장 확보기한을 정하여 인근(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당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인근 주차장 확보기한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차장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인근 주차장 확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장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주차장 확보비용과 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제19조의24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주차장 확보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차장 확보비용 납부 통보를 받은 자가 확보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주차장 확보비용

제12조의17(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을 부과·징수 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⑦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른 주차장 확보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

----- 법 제19조의25제1항-----

-----.

1. · 2. (생략) ② · ③ (생략) <u>제12조의18</u> (생략) <u>제12조의19</u>(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u>법 제19조의24제1항</u>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12조의19</u> (현행 제12조의18과 같음) <u>제12조의20</u>(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u>법 제19조의25제1항</u>-----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